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중계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무선식 경종,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
(제3조의2제4항제5호)
- 나.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(제3조의2제6항)
- 다.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(제3조제4호
나목 및 다목)
- 라.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(제14조의7)
- 마. 출력전압시험 신설(제14조의6)
- 바. 하방살수시험, 방수시험, 표시내구성시험 신설(제11조, 제11조의2,
제16조의2)
- 사. 전선당김 시험 신설(제3조제22호)